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750
----------	------

제안일자 : 2019. 10. .

제안자 : 박현철의원 외 9인

1. 제안이유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인 광주, 용인, 남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경기도 동부권 7개 시군은 수도권 규제의 대표적 지역으로 특대고시지정 30여 년간 불합리한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속해 지나친 중첩 규제를 받고 있음
- 또한, 개별법령에 의한 중첩규제로 인해 수도권 역차별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의 진정한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을 실현하여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함.

2.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중 3개 이상의 중첩규제를 받는 해당 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국가균형발전 계획 단계부터 포함되어 지역발전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 및 지원 될 수 있도록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특수한 지원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는 “특수상황지역”에 포함.(안 제2조제7호 다목 신설)

3. 신·구조문 대조표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7.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p> <p>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p> <p>나.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한다.</p> <p>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 ----- ----- ----- -----</p> <p>가. ----- -----</p> <p>나. ----- ----- ----- -----</p> <p>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수변구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중 3개 이상 중첩규제 지역</p> <p>라. (현행 다목과 같음)</p>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잘사는 사회구현을 목적으로 제정한 특별법입니다.

법 제2조 제7호에서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개발 대상 도서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광주, 용인, 남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동부지역 7개 시군을 비롯한 특별대책지역의 주민들은 불합리한 각종 중복 규제로 지역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기도 광주는 특별대책지역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수많은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이로 인해 39만 광주시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에 따른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구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광주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19. 10. .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